

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4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2.

발의자 : 우원식 · 송옥주 · 이용득
윤종오 · 최인호 · 이학영
인재근 · 김현권 · 이원욱
김영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,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(語文)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, 권위적·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의 지급기준)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. 다만,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수당의 지급일)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”을 “제2조에 따른 수당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,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겸직의원의 수당)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.

제6조(입법활동비)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·연구 등 입법

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. 다만,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(準用)한다.

제7조(특별활동비)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.

제8조(여비)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제10조(상해·사망)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,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,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.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第5條(兼職議員의 手當) 國會議員

이 法律이 許容하는 다른 公務員의 職을 兼한 때에는 國會議員의 手當과 兼職의 報酬중 많은 것을 支給받는다.

第6條(立法活動費) ①國會議員의

立法基礎資料의 著集·研究등立法活動을 위하여 別表 2의立法活動費를 每月 支給한다. 다만,立法活動費를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 까지 國會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立法活動費의 支給日 및 計算方法에 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.

第7條(特別活動費) ①國會議員의

會期中 立法活動을 특히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活動費를 支給한다.

②特別活動費는 別表 3에 의한 支給額의 30分의 1에 해당하는 額에 會期日數를 곱하여 算出하고 會期中에 支給한다.

第8條(旅費) ①國會議員이 本會議

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國會

제5조(겸직의원의 수당) 國회의원

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.

제6조(입법활동비) ① 國회의원의

입법기초자료의 수집·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. 다만,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 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(準用)한다.

제7조(특별활동비) ① 國회의원의

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.

제8조(여비) ① 國회의원이 본회

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

<p><u>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.</u></p> <p><u>② 旅費의 支給基準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國外旅費는 旅行目的을 考慮하여 國外公式活動에 필요한 最小限度의 범위안에서 支給한다.</u></p> <p><u>第10條(傷害·死亡) 國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은 때에는 그 治療費의 全額을 支給하고, 그 傷害로 不具가 된 때에는 手當의 6月分相當額을,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手當의 1年分相當額을 支給한다.</u></p>	<p><u>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<u>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상해·사망)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,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,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.</u></p>
--	--